

# 우리나라 식품위해정보 수집·전달체계 현황 및 개선방향

*Improvement proposal for the food risk information  
collecting and transfer system*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속하고 정확한 식품위해정보 교류는 식품의 사전안전관리체계의 중요한 초석이다. 오늘날 국제식품무역의 안전사고 증가로 수출국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및 전 세계적인 위해정보 교류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위해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의 전문성 강화와 일상 및 비상사태를 대비한 INFOSAN 등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신속한 국내의 정보교류 활동의 강화가 중요하고, 식품안전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는 식품안전당국간의 MOU체결 등 밀접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1. 서론

오늘날과 같이 국제무역이 활발한 글로벌 사회에서 어느 한 국가의 식품안전 사고는 국내적인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파장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예로서 조류독감으로 동남아 10개국 20여명 사망, 영국에서 EU, 미국, 일본으로 확산된 광우병, 중국 분유의 멜라민 사건, 스웨덴에서 발표된 감자칩의 아크릴아마이드 검출 등 식품안전사고는 대형화, 세계화 되어가고, 대외FTA 협정 확대와 시장개방에 의해 유해식품 및 농축산물, GMO 식품, 중금속 오염 식품 등 해외 유해식품 유입 증가의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관심은 증

대 추세이고, 식품연관 산업의 피해도 증가하여 단체급식의 식중독, 만두소 사건, 김치 기생충 알 등의 사건으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유관 기업 및 납품업체에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실정으로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 또한 과다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 연구기관, 식품산업체, 소비자 등 식품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식품안전정보 교환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식품안전의 잠재적 위험을 다른 국가들과 사전 공유해야만 실제적인 식품안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저감화할 수 있겠다.

이에 우리나라 식품안전정보 전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식품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 2. 식품안전정보 수집·전달체계 현황

### 1) 법적 근거 마련

(1) 식품위생법[시행 2009. 8. 7] [법률 제9692호, 2009. 5.21, 일부개정]

제67조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정보센터의 법인 설립을 규정하고, 제68조에서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센터는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정보제공 외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등록·관리와 관련 교육 및 홍보,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고, 식품위해정보의 공동 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단체·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식품안전기본법[시행 2008.12.14] [제정 2008.6.13 법률 제9121호]

제24조 정보공개 확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대한 정보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국민 간에 정보의 공유를 강화하고, 정부는 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공개 확대 규정을 통하여 식품안전정보

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2) 식약청 위해정보관리 조직

식품위해물질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식약청의 위해정보 수집체계를 살펴보면 현재 정보수집 대상기관인 국내외 200여관을 포함하여 국내외 모니터들이 유럽신속경보체계 등 국제기구 및 제외국 식품안전기관들의 식품위해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해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 관련 정보는 1차적으로 수입국들이 국내로 수출되는 식품품목들에 대한 위해정보를 외교통상부(대사관)를 통하여 국내 해당 부처로 통보하고 있는 외교적 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식약관 등 각국 주재관들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식품위해정보 관련 식약청의 조직개편 현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06년 유해물질관리단이라는 새로운 유해물질 담당조직 소속 유해정보팀에서 위해정보관리가 집중되었고,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전달 등은 외부용역사업으로서 식품공업협회에서 수행되었다. 2009년에는 위해예방정책국으로 지위를 격상시키는 조직개편이 있었고, 유해물질 예방을 위한 위해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및 식품이력추적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16일 위해정보관리 전담 식약청 부속기관으로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신설하였다.

특히, 2009년 조직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1. 식품위해정보관리를 위한 식약청의 조직개편 현황**

연도	추진내용
2006.1	위해분석 체계화를 위하여 유해물질관리단 설치 및 지방청 유해물질 분석반 설치
2009.4	위해물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해물질관리단을 위해예방정책국으로 조직 개편
2009.7	“식품안전정보센터” 신설

식약청이 표방한 대의는 아래와 같고 식품안전 정보 관리체계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위해예방정책국 외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식품위해평가부를 설치하고 위해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위해분석 연구과 위해영향연구팀을 두어 위해분석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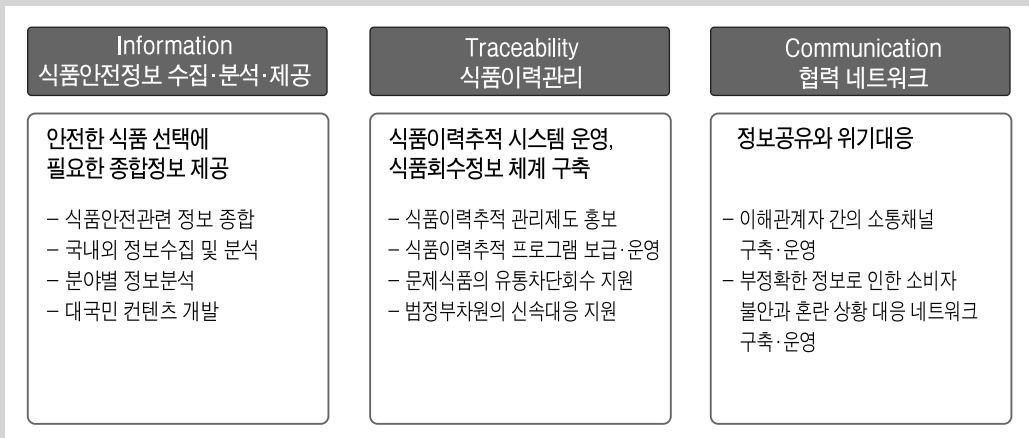
- 위해물질 관리 강화
- 식품안전정보 관리 체계 강화
- 실험실 업무 집중화
- 식품감시기능 확대 및 강화

### 3) 식품안전정보센터 설치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식약청의 식품위해 사 전예방 활동을 돕는 전문정보기관으로서 식품 안전 위기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약 20명의 직원으로 2009년 7월 16일 설치되었다.

[그림 1]의 센터 전략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실태와 과정을 공유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내외 정보네트워크를 갖추어 식품 위해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식품안전정보를 제

**그림 1.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전략과제**



자료: <http://www.foodinfo.or.kr/portal/index.jsp>

공한다. 또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을 추적할 수 있는 식품이력관리 기능을 한다.

즉, 소비자, 기업, 정부를 잇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소통 채널로서 정부가 사전예방정책을 수립하고 기준과 규격을 제정 및 개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산업체로 하여금 식품안전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식품안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그림 2]의 센터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 독어, 불어 등 7개 언어권에서 365일 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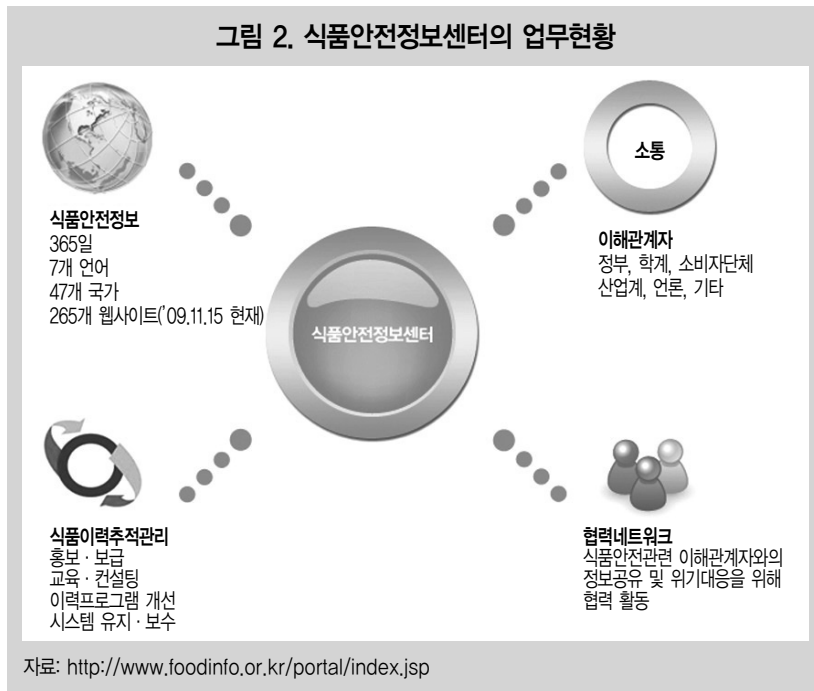
전 세계 47개 국가 및 265개 해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시간 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있

으며, 이를 CODEX,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미국식품의약청(FDA), 영국식품표준청(FSA) 등의 분류 기준에 맞추어 분석·제공하고 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1단계 식품안전정보 종합서비스 기관, 식품이력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품안전 소통 전문기관으로서의 브랜드 구축, 2단계 국내외 파트너십 강화로 쌍방향 소통 및 협력 실현, 3단계로는 식품안전정보 전문기관, 국내외 식품안전관련 Opinion Leader로서의 국내외 신뢰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 4) 식약청과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역할분담

급증하는 식품안전관리 영역은 기존 역량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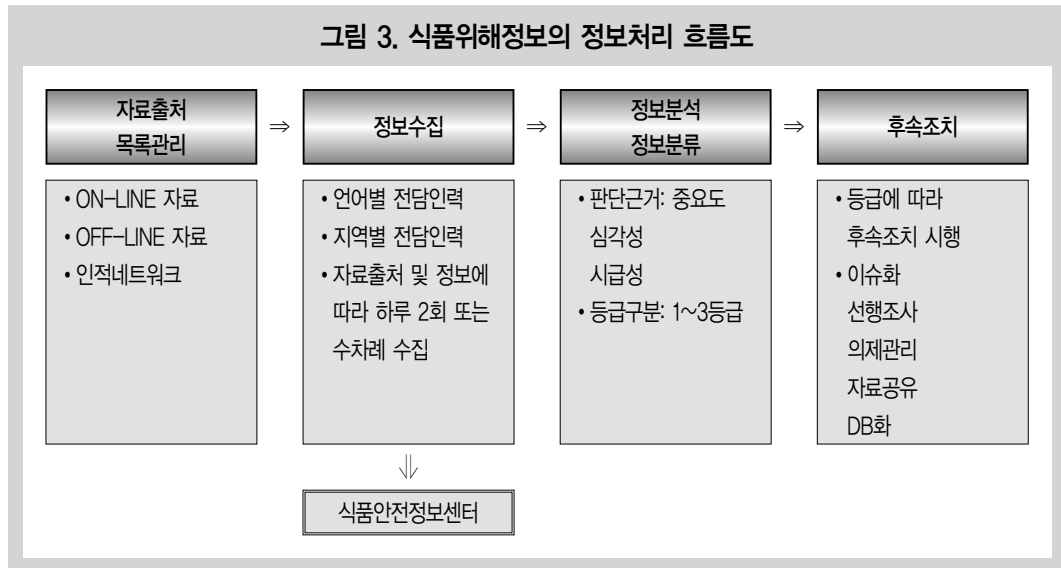


으로는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위해 정보 수집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식품안전문제가 사건기사 형태로 사회적 이슈화되기 보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사전 정보공유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그림 3]에 제시된 우리나라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와 같이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정보수집의 업무를 담당하고, 정보분석 및 후속 조치는 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표 2>에는 식약청과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업무영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있다. 식품안전정보센터 외에 중국과견 식약관 및 외국 정부와 주재관들로부터 정보가 제공된다.



**표 2. 식약청과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역할 및 업무영역**

구분	역할 및 업무영역	
식약청	① 자료출처 목록관리 ③ 정보분석 및 분류 ④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안전정보센터에서 수집되거나 중국의 식약관 등 각국 주재관 및 외국의 정부, 해외모니터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매일 보고받아 종합분석(심층조사 포함) 후 조치방안 수립(관리등급 결정 등)</li> <li>• 그 결과에 수입금지, 유통금지, 수거검사 등의 후속조치</li> <li>• 위해물질 저감화, 모니터링, 관련제품 수거·검사 등</li> <li>• 정보수집 역량강화 교육 등</li> </ul>
식품안전 정보센터	② 정보수집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식품전문기관, 뉴스, 인터넷 등 세계 200개 기관의 정보를 매일 수집하여 식약청에 보고</li> </ul>

### 3. 개선방향

#### 1) 식품위해정보 수집·분석체계 개선

##### (1) 인프라 확대

식약청의 위해정보 수집체계는 국내의 265개 정보웹사이드의 모니터링, 외교통상부(대사관)의 외교적 체계의 활용 및 중국의 식약관 1인 등 각국 주재관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최대수입국인 중국 북경에만 식약관 1명이 파견되었을 뿐 미국 등 그 외의 주요 수입국들에는 식약관 활동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3>의 2008년도 상위 10개 국가의 식품 중 수입검사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

입검사건수 대비 부적합비율은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의 관리는 산지관리가 안전성관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수입국 현지 정보의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주요 수입국들과 수입검사건수 대비 부적합비율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식약관 파견 또는 해외모니터 요원의 확충이 시급하다.

또한 부처 차원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검사관 파견 등 해외현지실사결과를 위해정보 전달체계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전문성 강화

유럽연합의 신속경보체계(RASFF)와 우리나라의 식품위해정보 수집체계를 비교한 결과가

표 3. 2008년도 상위 10개 국가 식품 중 수입검사 부적합 현황

(단위: 건, %)

순위	국가	검사건수	검사결과		
			적합	부적합	검사건수 대비 부적합비율
	총계	248,276	247,393	883	0.356
1	중국	74,479	74,154	325	0.436
2	미국	37,514	37,425	89	0.237
3	일본	36,394	36,351	43	0.118
4	프랑스	13,153	13,142	11	0.084
5	이탈리아	8,631	8,608	23	0.266
6	태국	7,050	6,996	54	0.772
7	독일	6,352	6,331	21	0.332
8	베트남	5,513	5,463	50	0.907
9	필리핀	5,001	4,976	25	0.500
10	영국	4,444	4,439	5	0.113

자료: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9.

<표 4>에 제시되어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동물, 식품, 사료에 대한 모니터링자료 및 식중독 발생현황 등의 위해정보를 유럽식품안전청에 보고하고, 취합된 정보들의 위험도를 분석하여 주·단위로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회원국들로 통보하는 사전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식품의약품안전청)는 유해물질 사전관리를 위한 최신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는 현재까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유럽의 신속경보체계에 비해 정보전달 단계는 미구분 되어있고, 전달 정보는 원자료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런 실태는 식약청 내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식품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 수행에 개선점으로 반영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위해분석연구과와 위해영향연구팀의

역할 강화로 위해분석 및 위해정보 전달 기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 설치된 식품안전정보센터에서 전달되는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위해분석 실시 및 피드백의 원활한 협업이 기대된다.

## 2) 식품안전 국내외 정보교류 활동 강화

### (1) 국내 정보교류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연구기관, 정부기관, 식품생산 및 식품가공산업, 소비자 간의 정보교환의 투명성을 향상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식품안전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각 부처별 식품 및 수입식품의 검사결과 등에 대한 정보가 부처간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식품 및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4. 유럽과 한국의 위해정보 전달체계의 비교

구분	유럽연합의 신속경보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보전달체계
대상	- 식품, 사료, 동물의 유해물질 정보 - 식중독 발생 관련 유해물질 정보 - 전염병 발생 관련 유해물질 정보	- 식품, 의약품의 유해물질
책임기관	- 유럽식품안전국 / 식품수의약국	-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정보센터
위험도에 따른 구분	- 3가지 종류로 구분 • 경보 통보: 즉각 대응(리콜 등) 필요 (예: 멜라민) • 정보 통보: 문제점 발견 및 통보 • 참고 통보: 필요시 참고적으로 통보	- 구분 없이 정보 전달
정보전달 형식	- 일자, 접수번호, 국가명, 통보이유, 발견상황, 진행사항 등의 정보내용 도표화하여 전달	- 도표화 또는 특정 전달 형식 부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9.

따라서, 식품안전 유관기관인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등 기관간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공동대응시스템으로 선제적 관세행정을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 관련식품협회와 단체,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정보교류협의체를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정보 수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입식품의 산지 정보는 기초정보로서 품목별 지역별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현지조사자료, 관세청의 수입식품 유통이력제도, 통계청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고, 유해물질 통계자료 생산 등을 위하여 RFID 등을 활용한 차세대 정보 수집방안 마련에 주력함이 바람직하다.

## (2) 국제 정보교류

국제적인 식품안전정보관리의 예로 국제기구인 WHO의 INFOSAN<sup>1)</sup>과 유럽연합의 신속경보체계 (FASFF), 미국의 식품안전연구정보 (Food Safety Research Information) 등의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식중독 관련 SP, FoodNet, OzFoodNet과 같은 능동적인 감시역할을 하는 것과 검사결과를 수집하여 원인균의 DNA-패턴을 이용하여 신속한 세부동정이 가능하게 하는 PulseNet, eLEXNET과 같은 실험실간의 정보망이 구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등의 접속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에 주력하는 실정으로 국제기구 또는 제외국과의 직접적인 정보

교류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식중독 네트워크와 같은 식품안전관련 정보망 및 국제적인 소비자 교육·홍보 기관 등과의 MOU체결을 통한 상호 정보교류의 활성화 기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국내의 식품사고 사례 후에는 일회성의 사건으로 결론짓지 않고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식품안전정보의 분석이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식약관 및 해외모니터요원 등의 파견을 통해 국제기구와 해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겠다.

즉, WHO, 유럽,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남미 등 해외 위해정보를 이들 나라의 식품안전기관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사전 정보를 얻고, 자체적으로도 정보를 적극 수집할 수 있는 범국가적 식품위해정보교류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식품위해정보의 활용성 제고

신속하고 정확한 식품위해정보의 확보와 함께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효과적인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으로 건설한 식품안전의 문화를 육성하도록 한다. 현재는 식품위해정보의 전달은 식약청 및 식품나라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 전달에만 급급한 실정으로 소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적절하게 또는 부정확하게 이슈화되거나 식품안전에 대한 불필요한 불

1) WHO의 식품 위해 정보 교류 체계(INFOSAN, 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y Network)는 2001년 이후 자연 발생적이거나, 의도적 첨가에 의한 또는 오염에 의한 식품 관련 건강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국가의 국제적·국내적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됨.



안을 야기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사례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전문적 시각을 인식하게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이 식품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식품사고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민감도가 급증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불평은 감소되고 선택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을 개발하게 되어 안전한 식생활 양식 형성과 생활의 질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사회적 측면에선 식품안전정책 실현이 원활해지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식약청에 설치된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업무를 향후 유럽연합의 교육·홍보 전문기관(EUroguichets: European consumer service Center)과 같은 전문기관으로 확대하여 단순 정보 수집에서 자료의 가공, 분석 및 소비자 교육홍보까지 담당하도록 그 전문성을 확대함도 바람직하겠다.

또한 식품별 유해물질 정보를 조기에 식품산업계에 전달하여 산업계로부터 식품위해정보 활용을 극대화시켜 자율안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여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초석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 4. 결론

식품위해정보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수집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특히 세계 식품무역의 안전성 문제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수입국가에 식약관 및 해외모니터과견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사전·사후 정보관리가 요구된다. 더불어 이러한 정보의 수집 활동으로 얻어진 위해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위해관리 의사결정을 위해 과학적으로 신속하게 분석되고 조치될 수 있는 위해관리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해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의 전문성 강화와 인프라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식품 생산과 무역의 급속한 세계화가 국제적인 식품위해사건과 오염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뿐 아니라 식품안전의 비상사태의 경우 정보의 신속한 교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식품안전당국간 및 INFOSAN 등 국제기구와의 MOU 등과 같은 협업체계 구축을 확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